도로교통법 위반(음주운전)

[수원지방법원 2011. 10. 20. 2011노3958]



【전문】

【피고인】

【항 소 인】검사

【검사】김지영

【원심판결】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. 8. 25. 선고 2011고정1175 판결

【주문】

1

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.

[이유]

】1. 항소이유의 요지

피고인이 의식불명인 상태에서 부득이 피고인의 아들의 동의를 얻어 병원에서 채혈을 한 것이므로, 채혈에 관한 영장을 청구할 시간적 여유나 법적 근거 등이 부족하여 이 사건 채혈은 형사소송법이 정하고 있는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이 사건 채혈에 기초한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.

2.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

피고인은 2011. 3. 5. 23:45경 혈중알콜농도 0.211%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구로동 소재 구로소방서 부근 앞 길에서부터 광명시 철산동 (지번 생략) 앞길까지 약 2km 상당의 거리를 경기 광명 (차량번호 생략)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.

3. 원심의 판단

이에 대하여 원심은,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있지만, 피고인의 아들 공소외인이 피고인으로부터 혈액을 채취하는 것에 동의하였을 뿐, 피고인이 이에 동의한 바 없고, 수사기관이 사전 또는 사후에라도 영장을 발부받은 바 없으므로, 이러한 채혈로 얻은 혈액에 대한 감정의뢰회보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로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라 증거로 쓸 수 없고, 이에 기초한 다른 증거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, 피고인의 자백외에 달리 이를 보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.

4. 당심의 판단

가. 인정사실

기록에 의하면, 피고인은 2011. 3. 5. 21:00경부터 23:30경까지 서울 구로구 구로동 소재 구로소방서 주변 식당에서 친구와 중국술을 마셨고, 같은 날 23:45경 경기 광명 (차량번호 생략)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광명시 철산동 (지번 생략) 앞길에서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의식을 잃어 119 구급차량에 의하여 인근 광명 ○○병원으로 후송된 사실, 병원에 온 경찰관은 피고인의 아들 공소외인의 동의를 얻은 후 의식이 없는 피고인의 열액을 의료진으로 하여금 채취하게 하였으나 법원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영장은 발부받지 않은 사실, 국립과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

학수사연구소는 채취된 피고인의 혈액을 감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.211%로 측정되었다는 내용의 이 사건 감정의로회보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
나. 판단

- 1)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는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음이 원칙이고, 다만 수사기관의 의 증거 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전체적·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,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.
- 2) 형사소송법은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 하여 압수,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고(제215조 제2항),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, 제200조의3, 제201조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체포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, 수색, 검증을 할 수 있으나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지체 없이 압 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며(제216조 제1항 제2호, 제217조 제2항),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,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하고(제216조 제3항),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감정을 위촉받은 감정인은 감정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판사로부터 허가장을 발부받아 감정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(제 221조, 제221조의4, 제173조 제1항)고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에 관하여 상세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바, 이러한 형 사소송법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,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영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동의도 없이 피고인의 신체에서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에도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그 혈중 알콜농도에 관한 감정을 의뢰하여 획득한 이 사건 감정의뢰회보는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채취한 혈액에 기초하여 획득한 증거로서 그 절차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, 음 주운전자에 대한 채혈에 관하여 영장주의를 엄격하게 적용하면 법률상 그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거나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병원에 후송된 피고인에게 의식이 있었다면 혈액 채취에 동의하였 을 가능성이 높고 그가 의식불명일 때 그의 가족이 혈액 채취에 동의한 사정 등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 감정 의뢰회보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 현하려고 하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수도 없다(대법원 2011. 4. 28. 선고 2009도2109 판결, 2011. 7. 14. 선고 2010도12604 판결 등 참조).
- 3) 따라서 위법하게 채취된 피고인의 혈액에 기초하여 획득된 이 사건 감정의뢰회보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정도의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, 이에 기초한 다른 증거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며, 피고인의 자백 외에 달리 이를 보강할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 또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으므로, 같은 취지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한 위법은 없다(한편 검사는 항소이유서에서 원심 판결에 심리 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

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

주장도 이유 없다).

5. 결론

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이은희(재판장) 윤중렬 이희승

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